
II

통화신용정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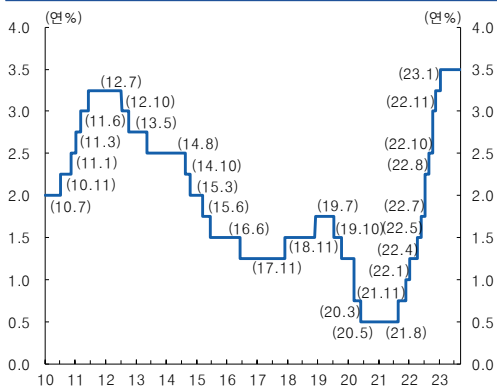
1. 기준금리	33
2. 금융중개지원대출	36
3. 여타 통화신용정책	37

1. 기준금리

연 3.50%에서 유지

한국은행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기준금리는 연 3.50%에서 유지하였다.

그림 II-1. 한국은행 기준금리¹⁾



주: 1) () 내는 기준금리 조정 월
자료: 한국은행

먼저 7월 회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3.50%에서 유지⁶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내경제는 수출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하반기에도 완만한 소비 회복세,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물가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낮아졌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전월 3.9%에서 3.5%로 상당폭 둔화되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물가 흐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 이후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둔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더딜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주요 가격변수가 등락하였는데,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높아졌다 반락하였고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상승하였다. 한편 일부 비은행부문에서는 빠른 연체율 상승과 이에 따른 불안심리로 리스크가 증대되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상승 전환하였고 지방은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8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유지⁶⁵⁾하였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지만 목표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

65) 총 7인의 출석위원 모두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0%)에서 유지하는 데 찬성하였다.

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는 등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소 완만해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금년 성장률은 1.4%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중국경제 향방 및 국내 과급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 IT 경기 반등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물가는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낮아지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3.3%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근원물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금년 중 연간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상회하는 3.4%로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주요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상당폭 높아졌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상승하였다.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지방에서는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계속 확대되었다.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조절

한국은행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등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2023년 2/4분기 유동성조절 필요규모⁶⁶⁾(평잔 기준)는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축소 등으로 지준공급이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하여 전분기보다 감소하였다. 단기시장금리의 기준금리 하회 지속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단기운용자금 흡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통화안정증권⁶⁷⁾ 발행규모를 단기물(28일물, 91일물) 중심으로 확대⁶⁸⁾하는 대신 RP매매⁶⁹⁾와 통화안정계정⁷⁰⁾ 예치 규모를 축소하였다. 7월에는 정부의 일시차입금 재증가 등으로 유동성조절 필요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를 추가로 확대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 확대 조치를 지난 7월 말 종료⁷¹⁾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이후 단기금융시장 등의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응하여 채권시장 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RP매입도 7월 중 전액(155억 원) 환매되었다.

66) 유동성조절 필요규모는 은행이 중앙은행 계좌에 실제로 적립하고 있는 잔액인 지준공급과 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 필요기준인 지준수요의 차이로 정의한다.

67)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평잔 기준)은 2/4분기 중 전분기 대비 8.4조 원 증가, 7월에는 전월대비 3.3조 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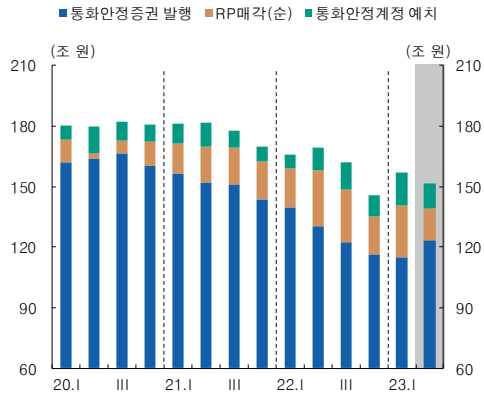
68) 지난 5월 중에는 통화안정증권 28일물을 비정례로 총 3차례에 걸쳐 3.3조 원(4일 1.6조 원, 11일 1.1조 원, 18일 0.6조 원) 발행하였으며, 91일물 통화안정증권 발행도 전월대비 3.0조 원을 확대하였다.

69) RP순매각(평잔 기준)은 2/4분기 중 전분기 대비 10.2조 원 감소, 7월에는 전월대비 2.3조 원 감소하였다.

70) 통화안정계정 예치(평잔 기준)는 2/4분기 중 전분기 대비 3.8조 원 감소, 7월에는 전월대비 0.2조 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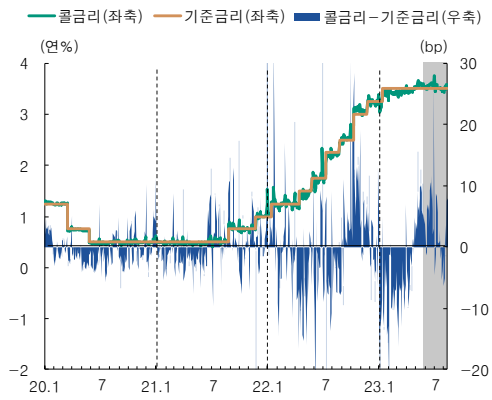
71) 이에 따라 RP매매 대상증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으로 환원되었다.

그림 II-2.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규모¹⁾



주: 1) 평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3. 기준금리 및 콜금리



자료: 한국은행

2. 금융중개지원대출

한국은행은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 각 프로그램별 대출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하고 있다.

2023년 9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1.5조 원, 신성장·일자리지원 13조 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0.3조 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9조 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조 원, 소상공인 지원 6조 원이며, 기타 한도 유보분 0.1조 원을 포함한 총 한도는 39.8조 원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9월 1일부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용 방향을 일부 개편하였다. 지역 내 업종별 자금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용되던 특별지원부문을 상시화⁷²⁾하였으며, 전략, 특별 및 일반 지원부문⁷³⁾의 한도를 한국은행 지역본부장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용⁷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2.0%이다. 다만 지난해 9월 말로 신규지원이 종료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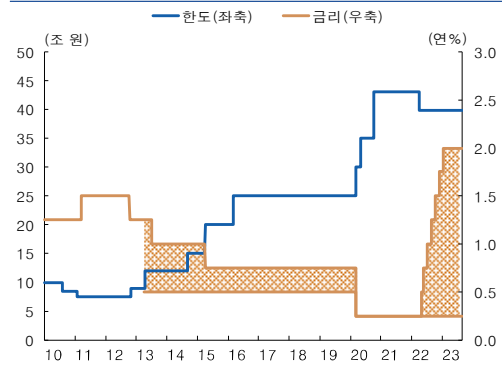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에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또한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연 0.25%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II-1.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

(조 원, 연%)		
프로그램	한도	금리
무역금융지원	1.5	2.00
신성장·일자리지원	13.0	2.00
중소기업대출안정화	0.3	2.00
지방중소기업지원	5.9	2.00
한도 유보분	0.1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0	0.25
소상공인 지원	6.0	0.25
합 계	39.8 ¹⁾	-

주: 1) 한도 유보분(기타) 0.1조 원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4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¹⁾



주: 1) 음영은 프로그램별로 대출금리가 상이하였던 시기의 상·하한 구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72) 특별지원부문은 2014년 9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부진업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1차)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기한을 4차에 걸쳐 금년 8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73) 전략지원부문은 지역경제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각 지역본부장이 인정한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를 지원하고, 특별지원부문은 각 지역본부장이 선정한 경기부진업종의 운전자금 대출에 한하여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를 지원한다. 일반지원부문은 전략 및 특별지원부문 이외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각 지역본부장이 인정한 부문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비례배분으로 지원한다.

74) 각 지역본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본부장 재량으로 각 지역본부별 전체 배정액의 40% 이상을 전략지원부문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특별 또는 일반 지원부문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3. 여타 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한국은행은 최근 미 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बैं킹 환경 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대출제도를 개편⁷⁵⁾하였다.

은행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 적격담보범위 등을 조정함으로써 이용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대출적격담보 범위를 지방채, 공공기관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하였다.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발생시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한국은행은 대출적격담보에 은행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 지속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금융·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관련하여 6월 15일과 7월 27일에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75) 7월 31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단,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 지방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8월 31일부터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¹⁾	추가 조치사항
▪ 자금조정대출 금리	기준금리 +100bp	기준금리 +50bp	자금조정예금 금리도 조정 (기준금리-100bp → 기준금리-50bp)
▪ 자금조정대출 최장만기	1일,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1일,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자금조정대출 적격담보범위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공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²⁾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공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³⁾, 지방채⁴⁾, 우량 회사채⁵⁾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종당적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

주: 1) 금번에 상시로 추가되는 증권은 밑줄로 표시
 2) 현재 7월 말까지 한시적 적격담보로 인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발행한 채권
 4)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
 5)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이상) 회사채
 자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6월 통화안정증권 정례입찰 운영방식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1년 7월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편⁷⁶⁾에 이은 후속 조치로 현행 중도환매, 정례모집 등 정례입찰 운영방식을 보완함으로써 통화안정증권의 시장성을 높여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대상종목에 3년물을 추가하는 한편 대상 잔존만기 및 종목수 등을 조정⁷⁷⁾하였다. 또한 기존 매 홀수월 2회(첫째·셋째 주 화요일) 실시하던 중도환매 주기도 매월 1회(셋째 주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정례모집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종목을 기존 1·2년물에 3년물을 추가하는 한편, 입찰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규모 및 종목별 배분을 모집 입찰 공고시 시장상황 및 우수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정례모집 입찰실시 및 결과 공고시간을 각각 20분 및 10분을 앞당겨 11:00~11:10분 및 11:30분에 실시하기로 변경하였다.⁷⁸⁾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강화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여건 건축 지속 등으로 초래된 부동산시장 부진, 글로벌 은행 불안과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요인이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점검하였다.

6월 「금융안정회의」⁷⁹⁾에서는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지속 등에 따른 취약요인과 함께 국내 금융기관 리스크의 현재화 가능성을 중점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택매매·전세 가격 하락, 미분양 누증 등 부동산시장 부진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취약시기별(빈티지) 연체율, 시나리오 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점검하였으며, 가계, 자영업자, 기업 등 주요 부문별 취약 요인과 잠재리스크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불안 발생, 부동산시장 부진 심화 등 대내외 충격 발생시 상대적으로 대응능력이 취약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상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평가하였다. 이에 더해 주요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 국내 금융안정 측면에서 취약요인을 점검하였다. 먼저 국내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 현황을 점검하고 잠재 리스크를 분석하였으며, 글로벌 은행 불안 사태가 달러화 자금 흐름에 미친 영향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국내 외화자금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 대상의 신뢰계기준 적용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과 같은 금융제도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수출산업 내재 탄소배출량 현황 및 수출기업의

76) 통화안정증권 정례입찰 대상종목에 3년물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182일물은 제외하였다. 또한 2년물 통합발행 기간을 기존의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였다.

77)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대상종목은 잔존만기 기준으로 1년물은 기존의 4·6개월에서 5·6개월로, 2년물의 경우 기존의 5·7·9개월에서 7·8·10·11개월로 변경하는 한편 3년물의 경우 8·11·14·17개월을 신규 추가하였다.

78) 기존의 통화안정증권 입찰결과 공고 시점이 시장의 유통성이 저하되는 점심시간과 겹쳐 낙찰 직후 통안증권의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79)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를 참고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국내 금융·경제 상황 관련 주요 현안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새마을금고 사태⁸⁰⁾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합리화 방안⁸¹⁾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예수금 동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된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현안 및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

기업여신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대출 취급 실태 및 건전성, 유동성리스크 대응능력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검사 결과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 앞 설명회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행태 개선을 유도하였다.

표 II-2 공동검사 실시 횟수

2019	2020	2021	2022	2023 ¹⁾
6	2	6	5	3

주 : 1) 2023년의 경우 1-8월 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리스크 요인, 금융규제와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안정 저해요인 등을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SEACEN 회원국 은행감독국장 회의에 참석하여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Supervisory College)에 참석하여 국제 금융·경제 상황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업무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BIS, G20, IMF 등 주요 국제기구 및 협의체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 경제 전망,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위기, 디지털 뱅크런, 글로벌 금융안전망, 가상자산 규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과 주요국의 정책 방향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요인을 시의성 있게 파악하여 정책대응의 유효성을 제고하였다.

한국은행은 제28차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총재회의 및 제12차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에 참석하여 EMEAP 산하 기구들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경제 동향, 지속가능금융, 역내 채권시장 등에 대해 논

80)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PF대출 부실화 등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7월 중 예수금이 큰 폭 유출되었다.

81) 연 2회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연체채권 관리 및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확대 등의 건전성 관리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새마을금고 '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 발표」(2023년 8월 31일)를 참고

의하였다. 또한 제12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금융경제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화스왑 계약을 통한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하였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6월 29일 개최된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⁸²⁾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한국은행은 양국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을 위한 후속 협의를 일본측과 긴밀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7월 ASEAN+3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CMIM 재원구조 개편과 신규 대출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범위 확대

한국은행은 당행 대출과 차액결제이행을 위해 납입되는 적격담보 범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대출용 적격담보 범위 확대에 맞춰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시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있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 및 은행채는 상시 적격담보로 지정하였으며, 추가로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및 우량 회사채도 상시 적격담보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의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8월부터 동 비율이 70%에서 80%로 인상되었다.⁸³⁾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PFMI」⁸⁴⁾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3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및 전자금융공동망) 및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2023년 6월 완료하였다. 평가 결과, 금융결제원 운영 시스템은 일부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이 운영 중인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 금융망에 대한 평가를 금년 중 마무리하는 한편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6월에는 증권사(1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적정성, 결제유동성 관리실태, 통화신용정책 수행 관련 특기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82) 계약기간은 3년이며, 양국은 자국 통화(원화 및 엔화)를 담보로 상대국이 보유한 미 달러화(최대 100억 달러)와 교환이 가능하다.

83)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 2022년 2월 70% → 2023년 8월 80% → 2024년 8월 90% → 2025년 8월 100%

8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2012년 4월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인 PFMI를 제정·발표하였다. 이후 CPMI-IOSCO는 PFMI 준수를 위한 보충적 지침으로서 「FM 사이버복원력 지침」(2016년 6월), 「FM 손실복구 지침」(2017년 7월), 「CCP(Central Counterparty) 복원력 추가지침」(2017년 7월) 등의 국제기준을 추가 제정하였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 지속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현금 이용 감소세 지속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하였다.

우선 CBDC 모의실험 연구⁸⁵⁾를 통해, 가상 실험환경에서 CBDC의 기본기능(발행·유통·환수 등)을 구현하고 IT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이어서 CBDC 모의시스템을 보다 실제와 유사한 IT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점검하기 위해 15개 금융기관(14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과 협력하여 금융기관 연계실험⁸⁶⁾을 수행했다. 실험 결과 모의시스템이 전국 각지에 소재한 금융기관의 IT센터와 연계하여도 정상 작동하고, 성능은 모의실험 대비 약 10% 정도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CBDC 연구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부처와 법·제도적 이슈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 외에도 CBDC 관련 대외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 CBDC 연구 진행상황을 활발히 공유하고 특히 국제결제은행(BIS)과는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우리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최적 CBDC 설계모델 및 제도를 탐색하는

차원에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민간부문, 국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CBDC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연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BIS 혁신허브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CBDC를 활용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85) CBDC 모의실험 연구(2021년 8월 ~ 2022년 6월)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2022년 11월)을 참고

86)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2022년 7월 ~ 2022년 12월)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결과」(2023년 5월)를 참고

참고 II-1.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내용 및 향후 계획

42

금년 3월에 있었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은 디지털 बैं킹 환경하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¹⁾ 국내에서도 금융의 디지털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 및 활용도가 높은 만큼 대규모 예금인출 위험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²⁾ 이에 한국은행은 금년 7월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금조정대출 등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개편하고 향후 계획을 마련하였다.

자금조정대출제도 개요

자금조정대출제도는 은행들이 자금수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차입은행이 기본적인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³⁾하고 적격담보를 납입할 수 있다면 차입수요에 따라 제한 없이 단기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부

족을 해소하는 안전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자금조정예금⁴⁾ 금리와 함께 각각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형성하기 때문에 단기시장금리가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면서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미 연준,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금융시장 안정과 통화정책 운용을 목적으로 자금조정대출제도와 유사한 상시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⁵⁾

개편 필요성

자금조정대출제도는 그간 단기시장금리 변동성 제한, 금융시장 안정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 확보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자금조정대출의 적격담보 범위가 주요국 중앙은행에 비해 좁게 설정되어 있었다. 미 연준, ECB, 영란은행 및 일본은행은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국공채 외에 회사채, 자산담보부 증권 등 시장성 자산을 폭넓게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시장성 자산인 금융기관의 대출채권도 담보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금조정대출의 적격담보 범위는 국채, 통안증권, 특수

1) 2023년 5월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3월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일중 최고 예금인출률은 총 예금대비 각각 약 25%, 20% 수준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및 1984년에 뱅크런으로 파산한 워싱턴 뮤추얼 은행과 콘티넨탈 일리노이 은행의 경우 동 비율은 각각 2%와 8% 수준이었다.

2) 한국은행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출제도 개편과 함께 개별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소진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비율도 당초 예정대로 상향 조정(70% → 80%, 2023년 8월)하였다.

3) 「한국은행법」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상 자금조정대출의 대상기관은 지급준비금 예치대상 금융기관인 은행이며, 한국은행 총재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 되지 않도록 재무건전성이 열악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금조정대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자금조정예금은 은행들이 일시 여유자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 3월 자금조정대출과 함께 도입되었다. 자금조정대출과 예금금리는 모두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일정 격차를 가지도록 설정되며,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단기시장금리를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5) 미 연준의 Discount Window, ECB의 Marginal Lending Facility, 영란은행의 Operational Standing Lending Facility·Discount Window Facility, 일본은행의 Complementary Lending Facility가 각각 이에 해당한다.

은행채 등으로 국한되어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자금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2022년 11월 이후 적격담보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지만 이는 한시적 조치⁶⁾라는 한계가 있었다.

데다 국채, 통안증권 등 고유동성 증권을 적격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금조정대출 이용에 따른 부정적 인식⁷⁾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국 중앙은행 상시 대출제도의 주요 적격담보 현황

구분	미 연준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공공 부문 발행	정부 지방정부 GSEs ¹⁾ 국제기구 외국정부	정부 정부기관 지방정부 국제기구 ECB	정부 정부기관 국제기구 중앙은행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국제기구 외국정부
시장성 자산	금융 부문 발행 - ABCP - ABS - CD - CDO - CLO - MBS - 회사채	- ABS - Covered Bond - 신용기관 ²⁾	- ABCP - ABS - Covered Bond - MBS	- ABCP - ABS - CP - 부동산 - 투자회사 - 주택금융 기관
비금융 부문 발행	CP 회사채	비금융기관	CP 회사채	CP 회사채
비시장성 자산	대출채권	대출채권 ³⁾	대출채권	대출채권 ³⁾

주: 1)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2) Financial corporations other than credit institutions 발행분 포함
 3) 가계 제외
 자료: 각국 중앙은행

마지막으로 현행 「한국은행법」 상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대상기관은 은행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은행 이외의 예금취급기관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 지원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⁸⁾ 비은행예금취급기관⁹⁾의 수신규모가 은행 총 수신의 약 40%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기관의 예금인출 확산시 금융안정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주요 개편 내용

이에 한국은행은 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②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③ 최대 연장가능한 만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금조정대출제도를 개편하였다.¹⁰⁾

다음으로 자금조정대출은 은행의 자금시장 예측 등에 일시적 교란이 발생하였을 때만 간헐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용빈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은행들은 만기 1영업일의 초단기 자금조달을 위해 기준금리 대비 100bp의 높은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① 적격담보 범위는 기존 담보(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특수은행채)에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던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상시화하고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 지방채, 우량 회사채를 새로 포함하여 확

6) 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 말까지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로 기존 담보(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특수은행채) 외에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한시적으로 추가하였다.
 7) 은행이 자금조정대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 수준을 감내하면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차입은행의 자금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8) 현행 「한국은행법」 상 상시 대출제도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범위가 「은행법」 상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법」 상 은행지주회사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한국은행법」 제80조의 상황요건(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9) 상호저축은행, 신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10) 동 제도 개편은 2023년 7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및 발표 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8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하였다. 동 적격담보 범위는 한국은행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증개지원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적격담보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앙은행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험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신규 추가된 적격담보증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잔존만기 등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차등하여 설정하였는데,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량 회사채(80~90%)의 경우 기존 적격담보(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 93~98%, 은행채: 89~94%)에 비해 낮은 수준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였다. 적격담보 비중 관리¹¹⁾에 있어서는 국채·정부보증채·통안증권(제1그룹)의 최소 납입 비중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여 신규로 편입된 담보증권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② 대출금리는 기존 '기준금리+100bp'에서 '기준금리+50bp'로 하향 조정하였다.¹²⁾ 이는 최초 자금조정대출 도입 시점의 기준금리 수준(2008년 3월 5.0%)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대비 100bp의 가산금리는 현재 상황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자금조정대출 도입(2008년 3월) 이후 콜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50bp 이상 벗어난 사례가 2차례¹³⁾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③ 대출만기는 기본적으로 1영업일이지만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이 원활히 기능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연장 가능한 최장 만기를 최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였다.

자금조정대출제도 개편 내용

	개편 전	개편 후 ²⁾
대출금리	기준금리+100bp	기준금리+50bp
대출적격담보증권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¹⁾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 ³⁾ , 지방채 ⁴⁾ , 우량 회사채 ⁵⁾
대출만기	1영업일,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1영업일,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주: 1) 2023년 7월 말까지 한시적 적격담보로 인정
2) 금번에 상시로 추가되는 적격담보증권은 밑줄로 표시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4)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
5) 일반기업(금융회사 및 공기업 제외)이 발행한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 신용등급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담보인정비율

대출 적격담보증권	담보인정비율 ¹⁾ (%)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93 ~ 98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91 ~ 96
은행채	89 ~ 94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	90 ~ 95
지방채	92 ~ 96
우량 회사채	80 ~ 90

주: 1) 이표제 기준이며,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자료: 한국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지원 방안

자금조정대출제도 개편과 함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필요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한국은행법」 상 제약으로

11) 한국은행은 특정 담보증권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담보증권을 무위험자산으로 간주되는 제1그룹(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과 신용위험이 내포된 제2그룹(그 외 증권)으로 나누어 비중을 관리하고 있다.

12) 자금조정대출 금리 조정에 맞춰 자금조정예금 금리도 '기준금리-100bp'에서 '기준금리-50bp'로 조정하였다.

13) ① 2009년 1월 19일: 기준금리 대비 -51.0bp, ② 2022년 6월 30일: 기준금리 대비 +58.7bp

인해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금번에 확대한 자금조정대출 적격담보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위기 시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 및 자금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한국은행과 감독당국 간 수시 정보공유 강화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금번 대출제도 개편으로 인해 예금취급기관들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한국은행의 대출제도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유동성 관리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기 시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수단을 확충함으로써 중앙은행 대출이 실제 사용되지 않더라도 유동성 위기시 시장불안 확대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금번 대출제도 개편에 이어 앞으로는 대출 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¹⁴⁾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는 상당한 규모의 시장성 증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에 대응한 자금조달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금융의 디지털화 심화로 예금인출 사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예금취급기관이 보유 증권을 시장에 투매(firesale)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예금취급기관이 자산의 70~80%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활용 가능하다면 필요시 중앙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나아가 예금취급기관의 시장성 증권 투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적격담보에 대출채권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 포함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은행의 대출채권을 적격담보에 포함하는 방안은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¹⁵⁾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1년 내외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중앙회 및 개별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14)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은 「한국은행법」 제65조 및 제80조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임시적격을 부여하는 경우 적격담보로 인정이 가능하다.

15) 대출채권 담보 활용에 있어서 법적 가능성 검토, 대출채권 담보가치 평가 체계 마련, 한국은행과 예금취급기관 간 대출채권 정보 입력 및 조회를 위한 전산 구축 등이 주요 검토 과제이다.

